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2. 7. 27.(수)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박영미*, 임동훈**, 정혜중, 김세완, 배성아, 류태경, 황진선, 남상택, 오숙환, 김정권	고민희(간사)
불참인원	2	유제욱, 이정화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 관련 논의(2021회계연도 내부감사 권고사항)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총학생회 직무대행자 변경으로 류태경 학생 평의원이 보궐평의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안내하다. 이어 배성아 직원 평의원의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2022.8.31.일자로 종료되고, 유제욱 직원 평의원이 2022.8.31.일자로 퇴직 예정임을 알리다.
- 나. 의장은 유제욱, 이정화 평의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안내하고, 12명 중 10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전 회의록을 배부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 라. 의장은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학교 주요사항 보고를 위해 기획처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리고, 기획처장은 캠퍼스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법인이사회 승인 사항을 보고하다.

6. 안건 심의 및 논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1호의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이번 학칙 개정안은 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체육특기자 관련 출석 인정 조항인 학칙 제40조제3항 삭제, ② 조기졸업생의 졸업유예 신청 불가 근거를 학칙 제48조의5제1항에 명시,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됨을 학칙 제48조의5제2항에 명시,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에 대하여 재학연한 만료예정학기에 자동으로 학위가 수여되도록 하는 내용을 학칙 제48조의5제2항에 반영하는 건임을 설명하다.
- (3) 황진선 평의원은 체육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기획팀장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미 폐지된 전형이라고 답하고, 현재 대상 재학생이 없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4) 배성아 평의원은 체육특기자 전형이 다시 시행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현재 재로서는 없다고 답하다.
- (5) 김세완 평의원은 앞으로 체육특기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현재 대상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하다.
- (6) 배성아 평의원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을 전하다.
- (7) 김정권 평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학위가 수여되는 것에 대한 법적 논쟁의 여지가 없을지 우려의 의견을 전하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8) 기획팀장은 교무처에서 졸업 대상자에게 학사학위취득 유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매학기 시행하고 있으나, 재학연한 만료 시점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적되는 경우의 학생들이 있어 이를 구제하고자 개정하는 안임을 설명하다.
- (9) 김정권 평의원은 연락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 (10) 의장은 조기졸업생의 졸업유예 신청 불가 안은 어떠한 배경에서 제안되었는지 질의하다.

- (11) 간사는 조기졸업의 취지가 학위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졸업유예 신청 불가를 관련 조항에 명시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어 배성아 평의원은 현재도 조기졸업생은 졸업유예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 및 시행되고 있으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하다.
- (12)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공포 시행 시점에 따라 (1)과 (2)로 나누어져 있음을 안내하고,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대학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으로 ① 2022-1학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재적생이 없으므로 부칙에 근거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해당 내용 삭제, ② 통역번역대학원 교과과정 상 1회 1개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석사 학위과정 총 휴학기간을 2학기에서 4학기로 조정, ③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기당 취득학점을 12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임을 설명하다. 이어 ④ 2023학년도 각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 조정사항으로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BT융합협동과정, 피부응용과학협동과정 폐지, 공연예술대학원 25현가야금교수학전공 신설, 디자인대학원 광고·브랜드디자인전공→브랜드디자인전공으로 전공명칭 변경, 디자인대학원 공예매개MD전공 폐지 안을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3) 김정권 평의원은 통역번역대학원의 1회 1개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기획팀장은 통역번역대학원의 경우 지정된 선수과목 등이 있어 한 학기 휴학 시 교과목 수강이 어려우므로 교과과정 상 1년 단위 휴학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현 규정으로는 한 번의 휴학 신청 기회만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4) 배성아 평의원은 통역번역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상향 조정할 경우 등록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등록금 변동은 없다고 답하다.
- (5) 황진선 평의원은 통역번역대학원만 학기당 취득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와 등록금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일반대학원의 경우도 학기당 취득학점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6) 기획팀장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학점은 24학점인 반면 통역번역대학원의 경우 44학점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원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하다. 이어 통역번역대학원에서 타교 유사 대학원의 학점수 및 등록금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수정한 안임을 추가 설명하다.

- (7) 김정권 평의원은 본교 대부분의 교과목이 3학점 단위인데 15학점이 아닌 14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통역번역대학원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목이 2학점 단위여서 2학점만 추가 상향 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답하다.
- (8) 황진선 평의원은 디자인대학원의 공예매개MD전공은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지원자가 없었다고 답하다.
- (9) 오숙환 평의원은 디자인대학원 내에 공예 관련 전공으로 크래프트디자인전공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학년도에 중복되는 전공을 추가로 신설한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당시 신설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다. 기획팀장은 신설 당시 계획서를 추후 공유하겠다고 답하다.
- (10) 정혜중 평의원은 BT융합협동과정에 재적생이 있는 상황에서 학과를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재적생이 있는 학과를 폐지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구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하다.
- (11) 김정권 평의원은 재적생이 남아 있는 학과를 폐지시키는 선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하고, 학과 폐지 및 새로운 과정을 설치할 때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12) 기획팀장은 2020학년도에 BK사업 신청을 위해 BT융합협동과정이 신설되었으나 현재 신입생 모집 및 학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학과에서 직접 폐지 신청을 하였으며, 박사과정 휴학생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였다고 답하다.
- (13) 의장은 학과간협동과정은 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관 대학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최근 BK21사업 및 정부 인재양성사업 등의 신청을 위해 협동과정을 포함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 기반의 학과 신설 및 폐지는 행정적인 소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학과 신설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기존 학과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다.
- (14) 김세완 평의원은 학과간협동과정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신설하게 되므로 관련 전임교원 채용 및 학부 전공으로 확장하기 전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협동과정 신설 및 폐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전달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15) 황진선 평의원은 BT융합협동과정 박사과정 휴학생 1명의 의사를 확인했다고는 하나, 학과와 학생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16) 부의장은 해당 건은 이미 각 구성단위에서 합의되었고, 편제조정위원회,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므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17) 김정권 평의원은 BT융합협동과정 소속 재적생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학평의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18) 배성아 평의원은 이전 법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 폐지 시에도 남아있는 재적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학사지원을 하였으므로 BT융합협동과정 휴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 (19)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묻고, 참석 평의원 중 7명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되, BT융합협동과정은 학과 폐지 전 재적생의 협동과정 참여학과로의 전과 조치를 포함한, 소속 재적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전달하기로 하다.

나. 논의사항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 관련 논의(2021회계연도 내부감사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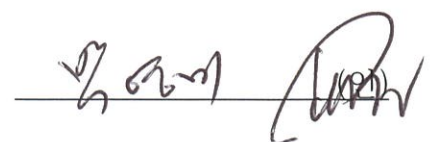
-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 관련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다.
- (2) 간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감사 결과 대학평의원회 관련한 권고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안을 논의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현재 본교는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을 전체 평의원들이 회람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규정에 따라 의장의 서명을 날인하여 회의록을 제출·공개하고 있으나, 참석인원이 회의 시점에 실제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참석자 전원의 회의 참석 서명을 수행한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내부감사 권고사항을 보고하다. 참고로 주요 대학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참석자 전원 서명 후 회의록에 첨부하거나, 회의록을 확인한 후 참석자 전원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부연하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회의 참석자 전원 서명 후 회의록에 붙이는 개선안을 제안하다.
- (3) 의장은 개선안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 평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번 회의부터 회의 참석자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2년 7월 27일

의 장 박 영 미



대학평의원회 2022년 제3차 회의

일시	2022. 7. 27.(수) 10: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	-----------------------	----	---------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박영미	
교수 평의원	임동훈	임동훈
교수 평의원	정혜중	정혜중
교수 평의원	김세완	김세완
직원 평의원	배성아	배성아
직원 평의원	유제욱	
학생 평의원	류태경	류태경
학생 평의원	황진선	황진선
동창 평의원	남상택	남상택
동창 평의원	이정화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